

부산영상벤처센터 영화촬영 제작기기 대여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부산영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직제규정 제4조에 의한 부산영상벤처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운영에 관한 사항 중 영화촬영 제작기기(이하“제작기기”라 한다)대여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제작기기라 함은 영화 등의 촬영에 필요한 촬영기, 달리, 크레인, 기타 촬영용 기기 등의 장비를 말한다.

제3조 (대여대상)

- ① 이 규정에 의한 제작기기 대여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 제작자로서 위원회에 촬영지원 신청을 접수한 제작사와 국가기관, 공공단체 등이 의뢰하는 작업으로 한다.
- ② 제1항 이외 의뢰자의 제작기기 대여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정할 수 있다.

제 2 장 제작기기 대여

제4조 (제작기기의 종류)

이 규정에 의하여 대여하는 제작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촬영기 및 촬영용 렌즈
2. 달리
3. 크레인
4. 기타 위원회가 대여할 수 있는 제작기기 등

제5조 (대여신청)

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작기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 라 한다)는 별지서식 제1호의 “제작기기 대여 신청서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 (대여순서)

제작기기의 대여는 “제작기기 대여 신청서” 접수 순서로 하되 부산, 경남 등 인근 광역권에서의 촬영 분량을 감안하거나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영화관련업체 및 센터 입주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7조 (대여승낙)

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제작기기 대여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사용자에게 대여 승낙여부를 통보한다.

제8조 (계약의 성립)

사용자가 별지서식 제2호의 “제작기기 임대차 계약서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, 별지서식 제3호의 “제작기기 대여 약정서”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계약은 성립한다.

제9조 (대여거부 및 보류)

위원회는 제5조에 의한 제작기기 대여신청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, 그 보완이 될 때까지 대여신청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.

제10조 (대여조건)

제8조에 의하여 대여 받은 제작기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사용자는 제작기기를 촬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.
2. 사용자는 제작기기를 공동으로 사전 점검하여 이상유무 확인절차 후 사용하고 반납하여야 한다.
3. 사용자는 제작기기 사용 중 발생한 제비용을 부담하며, 손망실, 기기고장, 파손, 인명피해 등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.
4. 제작기기의 반납 시에는 대여 전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 반납해야 한다.

제11조 (대여중지 및 취소)

제작기기 대여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

있다.

1. 제작기기의 파손 또는 고장 등으로 대여가 불가능할 때
2. 사용자가 제10조에 의한 대여조건을 위반했을 때
3. 기타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기기의 대여가 불가능할 때

제12조 (대여기간의 간주)

사용자가 제작기기를 대여 받은 후 제반 사정으로 인해 사용치 않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대여기간으로 간주한다.

제13조 (사고처리)

- ① 사용자가 제작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작기기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담당자는 제작기기의 이상유무를 별지서식 제4호의 “ 제작기기 대여 사고 보고서” 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.
- ② 사용자는 사전 점검 후 대여받은 제작기기의 손망실, 고장, 파손, 인명피해 등의 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상한다.
- ③ 제2항의 변상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 및 성능의 것으로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, 원상회복 및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산정한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 3 장 대여료

제14조 (대여료)

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 별지서식 제5호의 “ 영화촬영 제작기기 대여료” 에 의한다.

제15조 (대여요금납부)

- ① 사용자는 제작기기 대여신청서에 의거하여 계상된 대여료를 제작기기 대여 전에 현금으로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사용자는 제작기기의 대여연장을 원할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, 대여연장에 따른 대여료를 계약체결과 동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보 칙

제16조 (위임규정)

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.